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6. 12. 20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11월 11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11월 21일

라. 상정일자 : 제198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
제4차 사회건설위원회(2016. 12. 5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안전건설국장 연동열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에 위배되고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시 개선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보행환경 시책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보행환경기본계획의 수립 조항 삭제(안 제3조제1항, 안 제5조)
- 학부모 간담회 개최 사항 삭제(안 제8조제2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이태선)

- 본 개정조례안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쾌적한 보행 환경을 위해 상위법의 규정과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- 주요 내용은
 - 1)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와 안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중 「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특별시장이 수립하여야 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규정을 폐지함.
 - 2) 어린이 통학로 개선과 안전시설 보완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학부모와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간담회 규정을 삭제함.
 -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학부모, 학교 및 경찰서 관계자들과 의견수렴 등이 추진되고 있어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 다만, 통학로 개선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 될 수 있는 계획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.
-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규정 등을 반영하여 보행자 안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84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6. 11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가. 법제처에서 상위법과 위배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「영등포구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」 개정 요구에 따라, 구청장이 수립하는 보행환경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(이하 기본계획)이 수립주체(시장)에 위배되어 해당항목을 폐지하고자 함
- 나.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추진시 개선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구 조례 8조에 학부모와 연 2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되어있는 불필요한 의무규정을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폐지(안 제3조 및 제5조)
- 나. 구청장이 통학로 개선과 안전시설 보완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연 2회 학부모와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불필요한 의무규정을 폐지(안 제8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규 :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협의사항
 - 1) 규제심사 : 규제사무 없음
 - 2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 - 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동의
- 라. 기타사항
 - 1) 입법예고(2016.09.22 ~ 2016.10.12, 20일간) 결과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한”을 “위하여”로, “사무를 추진하여야”를 “책무를 수행하여야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.

제5조를 삭제한다.

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청장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구청장은 보행환경개선과 보행에 필요한 시책수립 및 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보행자가 걷고 싶고,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추진하여야 한다.</p> <p>1.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</p> <p>2. ~ 6. (생략)</p> <p>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 기본계획(이하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1.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</p> <p>2.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</p> <p>3. 보행환경 분야별, 단계별 사업계획</p> <p>4.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</p> <p>5.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5년마</p>	<p>제3조(구청장의 책무) <삭제>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위하여 ----- 책무를 수행하여야 ----.</p> <p><삭제></p> <p>2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

다 수립하고,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제6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 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.

제6조(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)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.

1. ~ 7. (생략)

제8조(어린이 통학로 개선) ① (생략)

② 구청장은 통학로 개선과 안전시설 보완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학부모와 연 2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

제6조(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) 구청장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어린이 통학로 개선) ① (현행과 같음)

〈삭제〉